

# 환경관리질의응답

## 대기배출시설 대상여부

**Q**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를 애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가공된 금속부품을 열처리 및 표면처리 하고자 탈지 - 가열 - 담금질 - 소둔, 질화 - 탈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탈지제를 사용하여 탈지 할 경우 탈지시설에 해당되는지, 또는 방지시설설치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소둔, 질화시설(소둔로  $3.1\text{m}^3 \times 1\text{식}$ ,  $0.5\text{m}^3 \times 1\text{식}$ ,  $0.14\text{m}^3 \times 1\text{식}$ , 질화로  $0.5\text{m}^3 \times 1\text{식}$ )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표3의 1)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으므로 공통시설 기타로에 해당되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따른 탈지시설의 경우 탈지제의 종류에 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모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소둔로, 질화로 등의 열처리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4호의 공통시설 중 자목의 기타로에 해당됨.

## 방지시설 설치

**Q** 만약 한 배출원에서 일반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동시에 배출이 될 때(일반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보다 항상 낮게 배출될 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인허가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됨에(극미량이 배출) 서류상 예상배출오염물질로 언급을 했다면 연간 배출량을 통해서 자가측정을 실시할 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됨으로 월 2회이상 측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배출원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만이 극미량 발생된다고 한다면 항상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배출되기 때문에 방지시설 의무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A**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11에 의거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동법 시행령 제6제에 의한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반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기TMS 설치에 따른 염산사용 기준 문의

**Q** 대기 TMS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 금속의 표면 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염산사용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염산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염산을 사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염산의 농도와 관련이 있는지? 농도와 관련이 있다면 몇%이상이 해당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되는 산처리시설이라 함은 염산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사용농도와 관계없이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

## 대기배출시설신고와 악취배출시설신고 구분여부

**Q** 당사는 반월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용해시설 및 혼합시설의 종설로인해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악취만 발생하는 공정이라고 하여 접수를 받지 않아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1)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고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대기배출시설신고는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시청 및 도청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 질의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이외의 물질이 원인으로 단순히 악취만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물질만 배출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질의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악취방지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악취검사기관 인력

**Q** 악취검사기관등록시 필요기술인력중에 대기환경기사가 있는데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후 20년경력(측정대행업체 7년, 환경관리인, 방지시설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대기 대체기사로 임명돼 있는자가 대기환경기사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측정대행업체 대기기술인력으로 4년이상 선임돼(악취관능법 등 대기관련 업무수행)있는자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악취측정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인력 요건중 기사는 당해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그 자격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기분야의 측정대행업 또는 대기분야의 환경기술인 등의 경력이 4년 이상 있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악취배출시설신고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도 병행?

**Q** 당사는 반월공단에 위치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서 생산공정 중에 도금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공

정에 대한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안산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질문 1) 금번에 도금공정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악취 및 대기설치신고 중 한가지만 해도 된다면 나머지 악취(or 대기)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질의 1) 증설하고자 하는 도금공정에서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금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또한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일련의 조립금속제조업 등의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증설하고자 하는 도금공정이 이미 신고한 악취배출시설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신고를 별도의 악취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증설되는 도금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배출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악취방지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기대행기관의 업무범위

**Q** 당사가 대기 2종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대기 대행기관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배출시설

# 환경관리질의응답

및 방지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실제 대행업체가 시설물점검을 해야 한다면 점검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요?

**A** 관리대행계약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9조에서 규정한 환경기술인의 준수(관리)사항범위로 정하면 될 것이며 그 외의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 변경

**Q** 화성시 마도지방산업단지내 소각장(종별 2종)은 05년 6월 1일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교부 받았으며, 가동개시신고(가동예정일 05. 07. 20)가 수리된 상황이지만, 산업단지 특성상 단지내 공장의 입주지연등으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동개시일 변경이 안될시, 상기의 이유로 소각장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술인력 채용과 자가측정대행계약등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가동신고서가 이미 수리된 경우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장기간 가동하지 못할 경우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 채용, 자가측정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지시설일지에 미가동 상황(기간, 사유 등)을 한번 기재하면 미가동에 따른 방지시설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폐수무단방류, 유출, 누출의 차이?

**Q**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여러가지 용어가 같이 사용되어 혼란스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폐수유출에 고의성이 있으면 무단방류, 기계, 시설 등의 고장 마모등에 의하여 흘러나가면 유출 또는

누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1) 위 용어의 차이를 알려 주세요.

질의 2) 폐수(ph12.5정도 황산임)가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이송도중 바람에 날려 몇방을 하수구로 나간 경우 폐수무단방류인지, 공공수역 수질오염인지요?

**A** 무단방류 등 법령위반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현장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도·점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폐수의 이송을 위하여 설비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바, 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이송도중 폐수가 누출된 경우라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무단방류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정의에 있어 유출은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누출은 액체, 기체 등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폐수의 이송처리 가능 여부

**Q** 같은 회사이나 서로 다른 곳에 사업장이 있고, 각각 폐수배출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일러 세정을 해서 폐액이 발생하는데, 폐수 집수조 및 처리 방법의 문제로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처리가능한지요?

**A** 폐수를 다른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처리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 되므로 폐수의 처리는 각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해당여부

**Q** 목(식품)제조 공장을 설립하려 하는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장의 규모는 약50평 정도구요. 장소는 경기도 안양 폐수배출량 및 농도는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여 예측할 수 없고요. 소규모 공장



인데 꼭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으므로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지?

**A** 폐수의 배출공정, 오염물질의 농도, 폐수의 처리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묵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일정량(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1호 참조)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등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각호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 됩니다.

참고로 특정수질유해물질 ·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20m<sup>3</sup>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폐수 무단방류 해당여부

**Q** 폐수를 전량 원료로 재이용하는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배관, 모터 등이 노후화되어 폐수 일부가 누출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배관, 모터등 모든것을 새로이 교체하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누출되는 폐수를 집수하는 피트를 만들어 이를 모타를 이용하여 전량 다시 재이용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공사중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누출되는 폐수가 회사내 집수관로에 고여 있고 이를 모타로 회수하여 원래의 방법대로 전량 재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집수관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토양으로의 흡수가 없으며, 집수관로를 통한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단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누출되어 집수관로에 고여 있고 이를 재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폐수무단방류에 해당하는지요.

**A** 무단방류 등 법령위반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점검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도 · 점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 처리후 방류수질기준

**Q** 질의 1)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를 단독처리후 인근하천에 방류할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은?  
질의 2) 음식물 쓰레기 발생폐수는 오수기준을 적용하는지 폐수기준을 적용하는지?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이 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월간지 구독 문의

TEL : (02) 852-2291(代)